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서식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체에 의한 결과보고 대행(안 제52조제4항)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내용

공유대상 정비(안 제58조제2항·제3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한해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 신고내용 공유 절차를 법 제43조제2항 개정 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모두 적용 되도록 정비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 개선(안 제60조제2항)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 전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선함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안 제75조)

결함시정계획서를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출기한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마.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구체화 등(안 제82조의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

바.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세부규정 마련

(안 제120조의4)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세부규정 마련(안 제121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등 지정기관 기준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측정대행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 중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로, “제4호까지”를 “제4호(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를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으로,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를 “않은 자동차로 예비판정하고”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를 “결과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를 “않은 자동차로 예비판정하고 제2차 검사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제74조제3항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4항”을 “법 제51조제4항·제6항 및 제53조제3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4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

8항”으로 한다.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8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한다.

제79조의13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14 중 “법 제58조의3제2항”을 “법 제5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의3제2호 중 “점검할 것”을 “점검(필요한 경우에는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을 포함한다) 할 것”으로 한다.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4항”을 “법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117조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한다.

제119조 중 “법 제74조제6항”을 “법 제74조제8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법 제74조제7항”을 “법 제74조제9항”으로 한다.

제120조의4 및 제1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소
4. 제품명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조기준 적합여부 합격증 사본
2. 첨가제 구성성분 내역서
3.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양도·양수 계약서(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조치이행확인서(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품의 공정도 및 생산 관련 사항(축매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제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121조의3(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2. 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한 전문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1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제51조제4항 및 제6항”을 “제51조제4항·제6항 및 제53조제3항·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같은”을 “제53조제4항과 같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에 뒤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참고 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뒤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참고 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7호의2서식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 2, 제79조의4제3항, 제82조의3제2호·제4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 제75조, 제120조의4,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 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p>	<p><삭 제></p>
<p>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p> <p><신 설></p> <p>④ (생 략)</p>	<p>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측정대행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p>	<p>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p>

등) ① (생략)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단-----
----- 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 중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신 설>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

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

----- 30일 -----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 방법 등) ① -----
-----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 않은

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1. 2.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예비판정하고-----

----- 않는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결과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않은 자

동차로 예비판정하고 제2차 검

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차검사

의 결과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④ -----

-----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제6항 및 제53조제3항·제5항-----

② ----- 법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② (생략)
③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

-----.

1. ~ 6.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9조의10(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

----- 법 제58조제18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0(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9항-----

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③ (생략)

<신 설>

-----.

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 법 제74조제9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소
4. 제품명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장은 그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조기준 적합여부 합격증 사본

2. 첨가제 구성성분 내역서

3.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양도·양수 계약서(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조치이행확인서(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품의 공정도 및 생산 관련 사항(축매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제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121조의3(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2. 검사장비

<신 설>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한 전문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통보해야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④ -----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 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3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 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3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 11. (생략)

②·③ (생략)

----- 등록해야 -----
--.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 협조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131조(출입·검사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법 제43조제4항-----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자동차 [] 연료첨가제 []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사전검사 합격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변경 내용	구분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품명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에 따라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업체명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기준 적합여부 합격증 사본 2. 첨가제 구성성분 내역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양도·양수 계약서(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조치이행확인서(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제품의 공정도 및 생산관련사항(촉매제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연료
자동차 [] 첨가제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촉매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변경 내용	구분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기술인력		
	검사장비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기관명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